



부실공사방지 정책방향

안 계 현 건설교통부 건설안전과 토목사무관
토목품질기술사

I. 서 론

건설산업은 급격한 경제발전 속에서 비약적인 양적팽창을 거듭해 왔으나 건설사업을 불합리하게 출속 추진함으로써 예산낭비, 부실시공 등 많은 병폐를 놓고 국가경쟁력 약화요인으로 작용하여 왔으며 '80년대 후반 이후에는 많은 문제점이 노출되었다.

특히 '86년에 아시안게임을 1개월 앞두고 발생한 독립기념관 화재사는 우리 국민들의 자존심에 큰 상처를 안겨주었고, 건설인들에게는 무거운 책임과 사고의 전환을 요구받는 계기가 되었다. 과거와 같은 기술과 건설관리 운영방식으로는 새로운 건설환경에 부응할 수 없다는 인식이 확산되게 된 것이었다. 이에 따라 입찰, 계약 등 건설공사 관련 제도를 전면적으로 정비하게 되었으며, 양질의 품질확보를 위한 보다 체계적인 장치가 요청됨에 따라 건설기술관리법을 제정('87.10.24.)하게 되었다.

그러나 정부의 지속적인 제도개선과 부실방지를 위한 행정지도에도 불구하고 대형 건설안

전사고가 연이어 발생하였다. '92년에는 시공 중인 신행주대교 교각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93년에는 구포열차 사고가 발생하였고, '94년초에는 대구 지하철 공사장에서 가스 폭발 사고가 발생하여 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다. 한편, '94년 및 '96년에 발생한 성수대교 및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는 우리 국민들을 크게 놀라게 하였을 뿐 아니라 국제 신뢰도를 실추시켰으며, 건설산업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이 커지는 계기로 작용하였다.

특히, 성수대교와 삼풍백화점 사고는 시공부 실과 함께 시공 유지관리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밝혀지면서 시설물 유지관리의 중요성이 부각되기 시작하였다. 이에 따라 학계·업계·정부 등의 전문가로 건설제도개혁기획단을 구성하여 "건설산업의 경쟁력강화와 부실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였으며,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을 새로이 제정하는 등 보다 근본적인 부실방지대책을 추진하였다. 한편, 정부는 부실방지대책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부실공사를 근본적으로 근절하기 위해 건설교통부



내에 건설안전심의관실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때마다 정부에서 단편적으로 추진중에 있는 부실방지대책 86개과제가 거의 완료되었으나 아직도 안양 박달로 우회구가교 교각 균열 발생 사고, 서울지하철 7호선 침수사고 등 크고 작은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되고 있어 국민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하고 있으며, 아울러 최근 IMF 관리체제로 건설비용이 높아지고 건설업체의 도산율이 증가함에 따라 부실공사 발생 가능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 보다 강도 높은 부실공사 방지 대책의 수립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따라서 '98년 이후에도 정부에서는 관련제도 개선, 그리고 이미 개선된 제도의 평가 및 보완, 건설현장 안전점검 강화, 건설기술자의 교육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주력하고 있다.

Ⅱ. 부실공사 방지대책의 추진

1. 부실공사의 원인

부실공사 원인을 대분류하여 보면 인적·제도적·관행적 요인으로 나누어진다고 볼 수 있다.

1-1 인적 요인

먼저 인적요인으로서 설계와 시방을 엄격히 따르지 않는 적당주의 등 건설업자 및 기술자의 책임의식이 부족함은 물론 감리 및 안전진단 등의 전문기술인력의 절대량이 부족하고 기술적 측면에서 선진국 수준에 비해 전반적으로 미흡하며 앞으로도 건설근로자의 노령화와 젊은 신규인력의 유입 감소추세가 지속될 전

망이다.

1-2 제도적 요인

제도적 요인으로서는 일반과 전문건설업의 엄격한 시장구분 등 과도한 경쟁제한으로 건설산업구조가 경직화되어 기술의 단절·불법하도급·위장계약사 설립 등 부작용을 초래하고, 공사가 대형화 되고 있음에도 시공과 설계가 분리되어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능력이 미흡하며, 또한 적격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도급한도액,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제(PQ) 등이 운영되고 있으나 획일적인 운영으로 개별공사의 특성이 제대로 반영되지 못하고 기술력을 배제한 가격위주의 입찰제도로 인한 덤픽입찰이 현장의 부실 공사의 주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고, 설계품질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고 책임감리제도가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표준건축비·노임단가·공사비 산정기준 등의 품셈이 비현실적이다.

1-3 관행적 요인

끝으로 한국건설산업현장의 오랜 잘못된 관행적 요인으로서는 감사원 감사결과에서 볼 수 있듯이 시공이외 계획·설계 단계부터 원초적인 하자개선이 시급하고 그간의 조치로 부실업자에 대하여 제재를 강화하고 있으나 처벌만으론 부실의 관행이 근절되지 않았으며 건설분야 기술개발투자(0.93%)와 건설관련자재의 품질관리체계 및 표준화가 미흡한 실정이다.

2. 부실방지를 위한 제도개선 및 추진실적

'93. 5 ~ '95. 7 간에 대형건설사고와 관련 4차례에 걸쳐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하여 발표된 과제는 총 41개로서 주요과제로는 부실업체 처벌 강화, PQ제 도입, 전면책임 설계감리제 도입, 지하매설물 관련 정보전산화, 건자재

정보망 구축 등의 과제를 완료하였으며, 또한 보다 근본적인 부실공사방지와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96. 2.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부실공사 방지대책"을 수립하고, 세부대책 45개 과제 중 37개 과제를 완료하였고, 8개 과제도 차질없이 추진하는 등 설계, 입찰, 계약, 시공, 감리, 유지관리 등 건설단계 전반에 걸쳐 종합적인 부실방지에 이바지하고 있다.

2-1. 제도개선 추진과제

- 1) 건설공사 부실방지대책('93. 5. 3 대통령
 께 보고)
- 2) 건설재해예방을 위한 종합대책('94. 10. 25
 당정협의)
- 3) 지하굴착공사장 안전관리체계 강화대책
('95. 5. 2 국무회의 보고)
- 4) 부실공사방지 및 건축물 안전확보대책
('95. 7. 13 국회 건교위 보고)
- 5) 건설산업경쟁력 강화와 부실방지대책
('96. 2. 13 중앙안전대책위원회 확정)

2-2. 제도개선 연도별 추진실적

1) 설계분야

● '95년도

- 설계감리제 도입(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 '95. 8)
- 다중이용건축물 안전심의 강화(건축법 시행령 개정 : '95. 12)
- 국도·고속국도상 교량 및 지방도상 주요교량에 대한 1등교 설계 의무화(도로교 표준시방서 개정 : '95. 12)

2) 시공분야

● '94년도

- 하자보수기간 연장으로 시공자 책임 강화(건설업법 및 주축법 개정 : '94. 1, 예산회계법 시행령 개정 : '94. 6)
- 부실시공업체 및 관련기술자 처벌 강화(건설업법 개정 : '94. 1)
- 하도급 직불제 도입(건설업법 개정 : '94. 1)
- 일괄하도급 및 불법하도급 제재 강화(건설업법 개정 : '94. 1)
- 건설공사 준공표지판 설치의무화로 책임감 부여(건설업법 개정 : '94. 1)
- '95년도
 - 공사대금 지급절차 간소화('95. 12행정조치)
 - 부실관련자 처벌 강화(건기법, 건설업법, 건축법, 시특법, 주축법 개정 : '95. 12)
 - 하도급계열화 권장대상업체 확대(행정권고 : '95. 2)
 - 하도급계열화 우수업체 인센티브 부여(입찰 참가자격 사전심사요령 개정 : '95. 7, 평가 기준 제정 : '95. 10)
- '96년도
 - 지하굴착공사 안전관리편람 제정('96. 4)
 - 저가하도급 심사기준 마련(공사계약 일반조건에 관련조항 신설 : '96. 12)
 - 건설근로자 복지수첩제도 도입(건설근로자 고용개선 등에 관한 법률 제정, 건설산업기본법 제정 : '96. 12 → '98. 1. 1부터 건설근로자 퇴직공제제도 시행)
 - 현장 배처플랜트 설치기준 확대(신공항, 고속 철도건설촉진법에 근거조항 마련 : '96. 12)
 - ※ 현장 B/P설치지침 개정(안) 의견조회 ('96. 7)(통산부 반대로 지침개정 보류)
 - 레미콘 건식공법 도입(건식레미콘 사용지침 마련 및 시달 : '96. 10)
 - 건설자재의 품질관리 강화(건설기술관리법 개정 : '96. 12)



- 다중이용건축물 시공능력심사제 도입(건설산업기본법 제정 : '96. 12)
- '97년도

 - 건설공사 현장설명제 도입(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정 : '97. 7)
 - 전문건설업 면허증 복 보유제한 완화(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정 : '97. 7)
 - 특수건설업 면허의 전문건설업 전환(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정 : '97. 7)
 - 시공능력공시제 도입(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정 : '97. 7)
 - 건설자재의 표준화 추진(건설기술관리법 개정 : '97. 1)

- ※ 공동주택 표준설계도 작성기준 고시('96. 9)
- 품질검사기관 지정제도 도입(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 '97. 7)
- '98년도

 - 철강제 제작 공장 인증제 도입
 - 철강제 공사 설계시 해당 등급의 공장을 시방서에 명기

3) 감리분야

- '93년도

 - '94. 1부터 50억원 이상 공공공사에 대한 민간감리체계 전환(건설기술관리법령 개정 : '93.12)

- '95년도

 - 다중이용건축물에 대한 감리수준 강화(건축법 시행령 개정 : '95.12)
 - 감리자의 권한과 책임 강화 및 감리업무 내용 구체화(건축법 시행령 개정 : '95.12)
 - 감리대가 현실화로 우수감리자 유입 유도(감리대가 개정 : '95. 1)
 - 감리시장 개방(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 '95. 8)

● '97년도

- 건설감리협회에 감리전문교육과정 설치 등 감리인력 양성(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 '97. 7)
- 책임감리대상공사 조정(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개정 : '97. 7)
- 감리자 배치기준 개선(건설공사감리대가기준 개정 : '97. 8)
- 부실설계 감리에 대한 손해배상 보증제도 도입

4) 공사현장 안전점검 실시

- '94 : 19회 실시, 1,634개 현장, 2,967건 시정
- '95 : 12회 실시, 2,982개 현장, 4,361건 시정
- '96 : 12회 실시, 4,286개 현장, 4,170건 시정
- '97 : 13회 실시, 3,453개 현장, 771건 시정

III. 앞으로의 정책방향

'98년에도 정부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대책에 대하여 제도개선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으며, 특히 추진할 주요사업계획 중 "부실공사 방지종합대책 수립"과 건설현장의 안전점검 강화, 부실측정 및 우수건설업자 지정으로 성실시공 유도, 건설기술자 교육 등을 통한 홍보 등으로 건설기술자의 의식개혁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있다.

1. 부실공사방지의 지속적인 추진

'93년 아래 네차례에 걸쳐 부실 방지 대책 41개 과제를 선정 추진 완료하였으며, 또한 건설 시장 개방을 앞두고 수립 추진한 건설 산업 경쟁력 강화 부실 방지 대책 ('96.2) 45개 과제 중 여지껏 미완료되었던 8개 과제에 대하여도

계속하여 차질없이 추진토록 하고 있으며, 개선 필요 과제의 지속적인 발굴과 함께 부실방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비록 작은 것이라도 개선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다. 미추진된 8개 과제는 계속하여 추진하여 나갈 계획이며 간단히 소개하면 아래와 같다.

● 건설 관련 각종 계약서 및 시방서 정비

- 건설 공사 관련 각종 계약서와 시방서 등을 정비하여 발주자 시공자 등 건설 주체간의 역할과 책임의 명확화 실적 공사비 적산제도 도입

● 실적 공사비 적산제도 도입

- 시중가격 반영 및 공공발주기관의 적산 업무 간소화를 위하여 표준 품셈을 단계적으로 폐지하고 선진국형 적산 방식인 실적 공사비 제도 도입

● 설계의 전산화 추진

- 설계의 전산화를 통한 기술인력 수요 감축
- 설계서, 준공 도면을 전산화하여 디스켓으로 제출토록 의무화하여 건설공사 시행 절차 개정

● 건설공사 시행절차 제정

- 사업 계획 구상단계에서 설계, 감리, 시공, 유지관리 등 건설 전단계의 시행 절차, 내용 등에 관한 규정 제정

● 예산 제도 개선

- 3년 이상 공사는 최대한 계속 사업 편성
- 장기 계속 사업은 공사 특성을 감안하여 재이월 허용

● 정부의 발주제도 개선

- 조달청 계약 공사의 발주기관 자체 설계 변경 허용

● 건설 자재의 종합 정보화 추진

- 건설 자재 관련 정보를 수요자들에게 신속

정확하게 제공 되도록 D/B화 하고 발주기관, 건자재, 생산업체, 건설업체를 연결하는 [건자재 종합 정보화] 사업추진(품목별 16,000 여종, 규격별 87,000 여종)

● 시공 및 유지 관리 일괄 계약 제도 도입

- 시공과 사후 관리 비용을 합친 총 비용이 최소가 되는 경제적인 설계, 시공 개념 도입

2. 부실공사 방지 종합대책 수립

1) 현황 및 문제점

● 대형건설사와 관련 대책의 실효성 미흡

- 성수대교, 삼풍백화점 등 대형사고 때마다 정부에서 단편적으로 추진한 부실방지대책 86개 과제가 거의 완료되고 있으나 건설단계별로 부실원인이 상존하고 있다.
- '93년 이래 4차례에 걸쳐 부실공사 방지대책 41개 과제를 선정 추진중에 있으나 일부 실효성이 미흡하다.
- 이 중 부실업체 처벌강화, PQ제 도입, 전면 책임 감리제 도입 등 모든 과제가 완료됐으나 일부 실효성이 미흡하다.

- '97년 안양 박달로 우회고가교 교각 균열 발생사고와 '98년 서울지하철 7호선 침수 등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국민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불신과 불만이 팽배하며 이를 공사가 모두 책임감리가 적용되고 있다는 점에서 현재의 부실방지대책의 실효성이 문제가 있음을 시사함

- 그 원인은 정부의 부실공사방지대책 상호연계, 검토없이 중복적용되거나 산발적으로 추진되었고,
- 부실공사 방지대책이 건설현장 중심의 지역적인 대책에 머물러 부분적인 효과에 그쳤으며,



· 부실공사를 근절하려는 정부의 의지와 국민들의 관심이 줄어들고 있기 때문이다.

● 건설산업 경쟁력 강화와 부실방지 대책의 평가 필요성 대두

- 건설시장 개방을 앞두고 건설 산업 경쟁력 강화와 부실방지 대책('96.2)을 수립, 추진중에 있으나
- IMF 등으로 건설시장의 환경이 크게 변화하고 있고, 총 45개 과제가 거의 완료되는 시점에 동대책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 부실공사 방지 관련 정부 정책의 혼재

- 부실공사 방지 및 건설 안전사고 예방 정책이 정부내에서 건설교통부, 노동부, 행정자치부 등에 혼재되어 있고
- 건교부에서도 건설기술심의관, 건설경제심의관, 건설안전심의관 등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종합적으로 정리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 건설 업계의 혼란 및 불만 팽배

- 부실공사 방지 대책이 산발적으로 발표, 추진되어 정책간의 혼란 초래는 물론 건설 현장에 정착이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며,
- 건설 업계에서도 중복규제와 불합리한 정책으로 인하여 정부에 대한 불만이 팽배하고 있다.

2) 개선효과

- 그간 개별적·단기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각종 부실방지 대책을 종합 분석, 평가하고
- 이를 토대로 장·단기 부실방지 종합 대책을 수립 추진함
- 건설공사는 참여 주체가 다양하고 공정이 복잡하기 때문에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하여야만 중복 규제와 불합리한 정부정책을 배제하면

서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부실공사방지 대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추진계획

- 1단계('98.8 - '99.3) : 부실방지 대책 종합 분석·평가
- 2단계('98.4 - '99.12) : 부실공사 방지 종합 대책 수립
- 3단계(2000.1 - 계속) : 부실방지 대책 세부 실천계획 수립 시행

3. 시공실태 점검 강화

건설공사 부실 방지를 위한 관리제도를 개선함과 함께 주요 건설 공사의 경우 분기별 1회 자체 점검을 의무적으로 실시 토록하고 있으며 등 특별 관리 대상 공사 및 레미콘, 아스콘 등 전자재 공장에 대한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있고, 민간 건설 공사도 지자체에서 점검을 실시한 후 건교부의 지방 국토 관리청에서 확인 점검을 하며 중대한 부실 시공은 엄중 처벌하고, 견실시공 수범 사례는 연중 발굴하여 포상토록 할 계획이다. 98년도 8월말 현재 연인원 1,251명을 동원하여 건교부 산하 각 시행청에서 실시한 건설공사현장 1,942개소에 대하여 시공실태 점검을 한 바는 아래와 같다.

- 점검 대상 : 1942개 건설공사 현장
- 공공공사 : 1791개소 (도로 875, 철도, 공항 등 986)
- 민간공사 : 151개소 (다중 이용 시설 20, 일반건축물 131)
- 점검 결과 지적된 부적정 사례 311건은 시정 조치 하였다.
- 시정명령 : 311건 (재시공 11, 정밀안전진단 7, 시공 보완 및 기타 293)

특히 올해에는 엘리뇨 현상 등으로 우기가 예년에 비해 빨라지고 계릴라성 폭우가 심한 해였는 바 우기 대비 점검도 초기에 실시하여 지적 사항에 대하여는 우기전 시정하여 큰사고 없이 수방 대책을 겸해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였다.

표1. 시공실태점검현황('96 ~ '98.8)

구 분	'96년도	'97년도	'98년도	비 고
● 점검개요				
- 점검횟수	12	13	6	
- 점검인원	3,160	2,192	1,251	
● 점검대상				
- 피점검기관	438	348	286	
- 피점검현장수	4,286	3,453	1,942	
· 공공공사	3,282	3,235	1,791	
· 민간공사	1,004	218	151	
● 점검결과				
- 의법조치	22	14	-	
- 시정명령	737	771	311	

4. 건설공사의 부실벌점 제도 효율적으로 운영

1) 부실벌점 제도의 도입배경

- 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건설관련 법령에 의하여 처분되는 중대한 과실이외에 경미한 부실공사 및 용역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해당건설업체, 용역업체 및 관련기술자 등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참가 제한 또는 PQ심사시 감점 등 불이익을 줌으로서
-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여 근원적으로 부실공사를 방지하고자 하는 데 있다.

2) 운영실적

- '95.10월에 건기법 제21조의4로 제정된 규정에 따라 50억이상 건설공사와 1.5억원 이상 설계·감리용역을 각 발주청에서 연2회(2월, 7월)에 걸쳐 부실벌점 측정결과를 건설협회 등에 통보토록 하고 있다.
- 통보된 부실벌점은 국가계약법에 따라 PQ심사시 불이익을 부과토록 하고 있다.
- 부실벌점 측정결과로는 건설공사 737개업체에 평균 1.34점 설계용역 87개업체에 평균 2.16점, 감리 224개업체에 평균 1.53점을 부과하였다.
- 부과된 부실벌점은 각 업체에 통보하였으며 PQ심사 자료를 위해 발주청의 요청에 따라 부실벌점도 통보하고 있다.

3) 효과

- '96, '97년 2년 간에 걸쳐 전국 건설관련기관 종사자 및 시민 등 5,000명을 대상으로 부실방지 대책관련 설문조사결과 약 80%가 부실벌점 제도가 부실방지에 효과가 있다고 응답

※ 또한 부실벌점 제도는 건설기술자에 대하여도 실시하므로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는 항상 견실시공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함으로서 실질적인 부실방지 효과를 얻고 있음.

※ 일부 PQ심사시 불이익으로 인하여 건설업계 및 기술자들이 불만 토로

4) 문제점

- 부실벌점 부과시 발주청에서 부과하는 기준이 애매한 점이 있어 건설업계 및 기술자들이 불만 야기함.
- 또한 IMF체제로 건설기술자들이 부실벌점으로 인하여 개인적인 불이익이 증대되고 있



표2. 부실벌점 제도의 부실공사 방지효과

	연도	매우 효과적	효과적	부실공사와 무관	오히려 부실공사 조장	계
전 체	'96	17.4	61.6	18.6	2.5	100.0
	'97	18.4	62.9	18.0	0.7	100.0
정부 및 공공발주기관 종사자	'96	18.8	65.6	14.2	1.4	100.0
	'97	18.0	66.7	15.3	0.0	100.0
설계 및 감리업 종사자	'96	16.4	51.7	28.4	3.5	100.0
	'97	20.5	56.5	21.6	1.5	100.0
시공업체 종사자	'96	16.6	64.1	16.4	2.9	100.0
	'97	16.8	65.5	17.1	0.7	100.0

표3. 부실시공에 따른 건설업체 행정제재 현황

구 분	'88	'90	'92	'95	'96	'97
행정처분 총건수	29	18	42	288	317	418
부실시공에 따른 영업정지 또는 과징금 건수	-	2	4	55 (19%)	47 (15%)	62 (15%)

※ 행정처분은 대부분 면허기준 미달로 면허취소 또는 하도급 위반사항임

어 이에 대한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다.

공사 방지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보완하겠다.

5) 향후 개선대책

● 관련 제도 개선

- 부실벌점 부과의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벌점 기준상 애매한 규정은 투명화 하겠으며
- 부실벌점 기준상 벌점부과 폭을 대폭축소(현 행1~6점⇒ 1~3점)하여 업계 및 기술자의 부담을 경감토록 개선하겠다.
- 발주관청이 부과한 벌점에 이의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이의신청할 수 있도록 벌점제도의 객관성을 확보토록 하겠다.
- 이와 같이 제도를 개선하면서 건설업체 및 건설기술자들이 불이익을 최소화 하면서 부실

5. 우수건설업자 지정제도 활성화

1) 도입배경

- 부실공사의 근원이 낙후된 건설기술 및 품질 관리에서 비롯된다는 판단에 따라
- 건설업자의 기술수준 향상과 건설공사의 경쟁적 품질확보로 성실시공을 유도하고 시공평가결과가 우수한 업체에 인센티브를 부여하기 위함이다.

2) 우수 건설업자에 대한 혜택

- 발주청은 자체발주공사에 대하여 유효기간 1

년간 1회 이상 국가계약법에 따라 지명경쟁입찰 참가자격 부여 가능

- 입찰참가자격 심사시 가산점 5점 부여 가능
- 건설산업기본법상 시공능력평가시 가산(도급액 산정시 100분의 5에 해당하는 금액 가산) 및 공사대금 선급금 지불에 우대 가능
- 당해 반기 최종집계된 부실벌점에서 5점 경감

3) '98 우수건설업자 지정현황

- 건기법을 개정('97.1)하여 우수건설업자 지정권자를 건교부장관에서 빌주청장으로 변경하고
- 올해 처음으로 서울청 등 14개 빌주청에서 43개 건설업체를 우수건설업자로 지정하고 통보

표4. '98 우수건설업자 지정현황

구 분	중앙기관	지자체	투자기관	계
발부기관수	7	2	5	14
우수업체수	20	6	17	43

4) '98 건설기술관리법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

- 우수건설업자 지정결과의 공신력 확보를 위하여 지정조건 강화등 제도개선
- 우수건설업자 지정비율(10%) 및 시공평가대상 공사금액(50억원이상)의 예외조항 삭제
- 부실시공 및 불법하도급에 따른 행정처분을 받은 업체 배제조항 강화

5) 올해 우수건설업자 지정에 따른 기대효과

- 그 동안 부실공사 방지대책 일환으로 부실업체에 대한 처벌 강화 등 규제중심에서 공정한 경쟁을 통한 성실시공 유도 방향으로 선회하여 나가겠다.
- IMF 여파로 국내 건설업체들이 크게 위축

되어 있어 이번 우수 건설업자 지정으로 건설업계에 활력소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본제도를 활성화 함으로서 시공업체 간의 품질경쟁을 유도하여 부실공사 방지 방향으로 유도하여 나가겠다.

6. 건설기술자 교육확대 실시

1) 현황 및 문제점

- 신행주대교 사고(92.7)이후 설계·시공·감리·안전 등 건설공사 전 단계에 걸쳐 관련제도를 개선 하였으나
- 제도개선 효과가 현장에 정착되지 못하고 일부 근로자의 적당주의가 잔존하여 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2) 개선 대책

- 건설기술자 및 기능공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건설현장 이미지 제고 및 의식 개혁을 유도하기 위함이다.
 - 부실공사 방지와 건설 안전 사고 예방과 관련된 정부정책과 제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한 홍보를 실시한다(연중)
 - 교육 실시
 - 건설교통 공무원 교육원, 건설 기술 교육원 등 관련 기관의 정규과목에 부실공사 방지 및 건설안전 과목을 편성토록 조치하였다.
- 각종 자격증 보수교육 및 직무교육시 부실공사 방지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 건설회사 담당 임원 및 현장 책임자를 대상으로 전국 순회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 일정 : '98.11 (전국 시도별 순회 교육)
- 주최 : 대한 건설 협회



3) 기대 효과

정부의 정책방향 홍보 및 관계자의 의식개혁을 유도하고 관련교육 기관을 통한 지속적인 교육실시로 견실시공 및 부실공사 방지가 조기에 정착될 것으로 기대된다.

IV. 결 론

부실공사 방지를 위한 다양한 대책이 마련되어 시행되고 있어 견실시공으로 가는 풍토가 조성되고 있으나, 아직도 일부에서는 설계미숙 및 기술자의 책임의식 부족으로 부실사례가 나타나고 있는 바, '97년도 안양 박달로 우회 고가교 교각 균열 피해가 발생한 사고로 부실공사가 완전히 근절되었다고는 볼 수 없는 그 좋은 예이다. 더구나 IMF 관리 체제하에 건설 경제위축으로 건설공사 시공중 불량자재 사용과 품질관리 등 소홀로 부실공사가 증가할 가능성이 상존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지금까지 관련제도 개선을 통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나, 그간 부실방지 대책이 단편적이고 일부 미흡한 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지금까지의 각종 대책을 종합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IMF 등으로 인한 건설시장 환경 변화를 감안 "부실공사 방지 종합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3단계에 걸쳐 추진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또한 건설공사의 시공실태 점검을 강화하여 주요 SOC 사업이 견실하게 시공되게 하기 위하여 전교부 산하 기관의 건설현장에 대한 시공실태를 매월 순회점검을 실시하여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시정조치를 하고 있으며, 특히 레미콘 아스콘 공장에 대하여도 불량제품이 건설공사 현장에 반입되지 못하도록 점검을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건설공사의 부실벌점 제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여 설계자, 시공자, 감리자가 항상 견실시공을 염두에 두고 업무를 추진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부실공사 방지에 효과를 얻고 있어 이 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며, 우수 시공 업자 인정 제도를 활성화 함으로서 건설공사의 성실시공 유도를 확산시키고 공정한 경쟁력을 통한 견실시공으로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각종 교육기관을 통한 건설기술자 교육을 강화하여 부실공사 방지에 관한 정부정책과 제도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교육을 통한 홍보를 실시하여 모든 건설관련 기술인들의 의식을 개선도록 혼신의 노력을 경주할 예정이다.

이와 같은 정부의 정책이 성공적으로 수행되려면 발주자는 시공자가 성실시공을 할 수 있도록 적정 공사비와 공기를 보장해 주고, 감리자에게는 적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하여 부실공사를 철저히 방지하도록 하여야 하며, 일단 발생한 부실시공에 대하여는 엄격한 책임을 물어 부실공사 시공업체가 건설업계에서 도태되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또한 정부의 정책에 효과를 최대한 거양하기 위해서는 부실공사를 초래하는 해묵은 관행이나 풍토를 근본적으로 시정하여야 한다. 그런점에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를 비롯한 모든 건설인은 자기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여, 정부의 부실 공사 방지에 대한 확고한 정책이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주도록 당부를 드린다. ☺